농림축산식품부	**보도자료**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5월 2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물복지정책과 과장 안유영(044-201-2371), 사무관 양성철(2382) /제공일: 5월 20일(총 10매)

걱정없이 동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동물실험 금지 동물(철도경찰탐지견) 추가 등 제도 보완으로 동물복지제도 강화

- 「동물보호법 시행령 · 시행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('20.5.21~'20.6.30)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◈ **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 추가** 및 **동물등록제도**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**영업자 준수사항 강화**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**동물보호법 시행령·시행규칙**」 **개정안 입법예고**('20.5.21~'20.6.30)

<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>

○ **동물실험 금지** 대상 **동물 추가**(철도경찰탐지견)

○ **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**(맹견관리, 유치원, 초등학교 등 출입금지, 공동장묘시설의 운영 등에 대한 감독 추가)

○ 신고**포상금 지급 기준 삭제**(동물보호법 제41조의2 포상금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도 삭제)

<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>

○ **반려동물의 범위 규정 조항 변경**(반려동물의 범위를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시행규칙 제1조의2로 이동하되, 동일한 내용으로 정의)

○ **동물등록 방식** 축소(무선식별장치, **인식표** → 무선식별장치)

○ 동물장묘 시설의 **화장로 개수 제한(현행 3개) 폐지**

○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**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** 신설 및 구체화

❑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**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,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**하기 위해 「동물보호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개정안을 **입법예고**(40일간, 2020. 5. 21 ~ 6. 30)한다고 밝혔다.

❑ **「동물보호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개정안**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>

1 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(철도경찰탐지견)

○ **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**(장애인보조견, 인명구조견, 경찰견, 군견,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)은 **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**하여 보호하고 있으나,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**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**되어 있어 **시행령안에 이를 반영**하였다.

2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

○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**동물보호감시원(공무원)의 직무**에 **맹견의 관리, 공설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·감독을 추가**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.

3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삭제

○ 「동물보호법」 개정('20.2.11 공포, '20.8.12 시행)으로 **법 제41조의2(포상금)가 삭제***됨에 따라,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**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**하였다.

* 신고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 조장과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삭제

<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>

1 반려동물의 범위 관련 근거조항 이동(시행규칙 제35조 → 제1조의2)

○ 「동물보호법」 개정('20.2.11 공포, '20.8.12 시행)으로 반려동물의 범위 규정이 법 32조(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)에서 법 제2조(정의)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던 **반려동물 범위를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**하였다.

2 동물등록방식 축소

○ **동물등록 방식**으로 **내·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**하고 있으나,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하였다.

3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

○ 현행법은 **동물장묘 시설**의 **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**하고 있으나,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**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**하여 **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**하였다.

4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신설 및 구체화

○ **동물판매업자**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, 등록기한 뿐만 아니라 **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** 등도 구입자에게 **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** 하였고,

○ **동물장묘업자**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**변경신고(동물의 죽음)에 관한 사항을 고지**하도록 하였다.

❏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**동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**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.

붙임 **「동물보호법」 하위법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**

시행령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동물실험 금지 동물) 법 제24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.	제10조(동물실험 금지 동물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.
4. (생 략)	1. (현행 제4호와 같음)
<신 설>	2. 농림축산식품부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 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검역 탐지견
1. (생 략)	3. (현행 제1호와 같음)
<신 설>	4. 국토교통부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에서 수색·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철도경찰 탐지견
5. 농림축산식품부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 및 관세청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	5. 관세청(그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에서 ---------- ----------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
3. (생 략)	6. (현행 제3호와 같음)
2. (생 략)	7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8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
제12조(윤리위원회의 운영) ① (생 략)	제12조(윤리위원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동물실험계획을 심의·평가하는 회의에는 법 제27조제4항 따른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. <단서 삭제>
<신 설>	③ 동물실험계획을 심의·평가하는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. 1.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2.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
③ ~ ⑥ (생 략)	④ ~ ⑦ (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)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⑧ ------- 제7항까지----------.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등) ①·② (생 략)	제14조(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③ ----------.
1. ~ 3의3. (생 략)	1. ~ 3의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의4. 법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에 대한 감독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의2. 법 제28조에 따른 지도·감독 및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및 지도
5.·6. (생 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의2. 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운영에 관한 감독
7. ~ 9. (생 략)	7. ~ 9. (현행과 같음)
제15조의2(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)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실을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	<삭 제>

현 행	개 정 안
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)·군수·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. ④ 동일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연간 20건을 초과할 수 없다.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,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

시행규칙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조의2(반려동물의 범위)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3에서 “반려(伴侶) 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”이란 개·고양이·토끼·페럿·기니피그·햄스터를 말한다.
제1조의2(맹견의 범위)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(猛犬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 략)	제1조의3(맹견의 범위) 법 제2조제3호의2-----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4조(학대행위의 금지) ① ~ ③ (생 략) ④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서 “반려(伴侶) 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”이란 개, 고양이, 토끼, 페럿,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.	제4조(학대행위의 금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⑤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·관리 의무는 별표 1의2와 같다.	⑤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·관리 의무”----------.

현 행	개 정 안
⑥ ~ ⑧ (생 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
제8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) ① (생 략)	제8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(이하 "무선식별장치"라 한다)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(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)을 발급하고,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(이하 "동물보호관리시스템"이라 한다)으로 등록사항을 기록·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한다)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9조(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)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9조(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	6. 무선식별장치---------- 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쓰게 되는 경우	----------
② ~ ⑨ (생 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
제35조(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)	제35조(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)
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·고양이·토끼 등 동물”이란 가정에서 반려(伴侶)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·고양이·토끼·페럿·기니피그·햄스터를 말한다.	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9와 같다.	
제36조(영업의 세부범위)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6조(영업의 세부범위) ----------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동물판매업: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(이하 “반려동물”이라 한다)을 구입하여 판매,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	2. ---------- 반려동물----------
3. ~ 8. (생 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